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리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선 고]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하고,

②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위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개의원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2] ①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의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별개의견이 있다.

		5인(법정의견)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4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환노위위원장 본회의 부의 요 구 행 위	권한침해확인청구	기각	기각(별개의견)
	무 효 확 인 청 구	기각	
국 회 의 장 가결선포행위	권한침해확인청구	기각	
	무 효 확 인 청 구	기각	



2023. 10. 26.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환경노동위원회는 ‘환노위’, 그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3. 2. 21.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고, 이 사건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23. 3. 27.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을 심사한 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 4. 26. 제40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법사위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던 2023. 5. 24.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이 사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였다.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자,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은 같은 날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5. 30.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2023. 5. 24.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장차 개의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할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2023헌라3), ㉠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

건으로 상정하는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3헌사584).

- 한편,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인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8.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 및 ②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2021. 9. 14. 법률 제184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법정의견(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의미

(1)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이유 없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소관 위원회 내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의 요구 이후 30일이 지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법의 취지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관 위원회 내부 또는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당부가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2) 또한, ‘이유 없이’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국회법 제86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를 통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체계·자구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국회 내의 사정에 비추어 법사위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

이처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

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판단

선행 절차인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하자가 후행 절차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승계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여기에 독자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대 90일로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과 달리,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을 것’을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유의미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회 내의 각 위원회가 고유의 역할을 통해 입법절차를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유 없이’를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또한 법정의견과 같이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대한 이유 유무의 판단이 소관 위원회 내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경우, 소관 위원회가 심사기간이 도과된 법률안들 중 특정 법률안을 임의로 선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거나,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사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국회법의 취지, 국회의 입법 관행, 당해 법률안의 내용,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심사 경위 및 내용,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심사절차를 통해 법사위가 입법절차를 지연시킬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사위가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아니한 채 심사기간이 도과하거나, 법사위의 심사 내용이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음이 명백하거나, 입법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사나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판단

환노위는 이 사건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1차례의 전체회의와 공청회, 4차례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법률안의 주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차관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법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의사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환노위에 전달하여 이러한 내용이 전문위원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반영되어 있고,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위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사위의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지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있음을 전제로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준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2023헌라2 사건 및 2023헌라3 사건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해석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는 국회법이 ‘이유 없이’에 대한 판단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간사와의 협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부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유 없이’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②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위 ①과 같은 해석을 전제로, **2023헌라2 및 2023헌라3 사건**에서 모두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이러한 소관 위원회의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모두 국회법상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위 ②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2023헌라2 및 2023헌라3 사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에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3헌라2 사건에서는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023헌라3 사건에서는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진행을 주장하면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다' 의 판단 기준	피청구인 소관 위원회 위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재판관 5인	①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u>절차에 따라 판단</u> ②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	[2023헌라2]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 +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과방위 판단의 정당성이 인정됨 =>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배한 위법 부존재 =>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모두 기각	[2023헌라2] ① 선행 절차인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적법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②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4항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독자적 하자도 부존재 =>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모두 기각
		[2023헌라3] 상동	[2023헌라3] 상동

<p>재판관 4인</p>	<p>①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p> <p>② 각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p>	<p>[2023헌라2]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p> <p>=>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위배</p> <p>=> 다만 그 하자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효확인은 하지 아니함</p> <p>=>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 및 무효확인청구 기각</p>	<p>[2023헌라2] 선행 절차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는 하나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는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선행 절차가 권한을 침해한다는 사유만으로 후행 절차인 가결선포행위에 권한침해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p> <p>=>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p> <p>=>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모두 기각</p>
		<p>[2023헌라3] 법사위는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진행을 주장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p> <p>법사위의 심사지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p> <p>=>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p> <p>=>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의 법정외견과 동일) 모두 기각</p>	<p>[2023헌라3]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모두 기각 (재판관 5인의 법정외견과 동일)</p>